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38호 2014. 7.30(수)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4-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7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7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81호 서구 일부 도로명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83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2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2014-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 기관 위원 현황이 직급 상향 및 기관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위원이 운영 규칙과 상이하어 이를 현행화 및 일원화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충실한 심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 (구성) 규정 변경
 -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 교통안전계장
 - 한국통신 서인천전화국 선로부장 → KT서인천 지점장
 - 한국전력 서인천지점 배전부장 → 배전운영팀장
 - 인천도시가스 시공관리부장 → 영업공사부장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 8.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 032-560-4526 / Fax 032-560-276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구성)에 의거한 각 기관 위원 현황이 직급 상향 및 기관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위원이 운영 규칙과 상이하여 이를 현행화 및 일원화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충실한 심의를 도모코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 조문 정비 (안 제4조)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 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으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의**”로, “운영 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심의회의 운영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으로, “규칙에 의한다”를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안전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KT 서인천 지점장

제4조제3항제5호 중 “배전부장”을 “배전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공관리부장”을 “영업공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굴착업무담당자”를 “도로굴착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요지하시설물”을 “주요 지하시설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분기초”를 “분기 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월 중”을 “2월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을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로, “주요 지하매설물”을 “주요 지하매설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로, “주요지하매설물”을 각각 “주요 지하매설물”로 한다.

제9조 중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을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 지하매설물”로 한다.

제10조 중 “도로굴착관련기관”을 “도로굴착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등을”을 “각 호의 사항 등을”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2. (생략)
 - 3.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 4. 한국통신 서인천전화국 선로부장
 - 5. 한국전력 서인천지점 배전부장
 - 6. 인천도시가스 시공관리부장
 -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2. (생략)
- 3. 도로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4. ~ 6. (생략)
- 7.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조(소심의회 운영) ① (생략)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

- 1. 2. (현행과 같음)
 - 3. ----- 교통안전계장
 - 4. KT 서인천 지점장
 - 5. ----- 배전 운영팀장
 - 6. ----- 영업공사부장
 - 7. 그 밖에 -----
- ④ -----
---- 도로굴착 업무담당자---
--.

제5조(기능)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 3.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4. ~ 6. (현행과 같음)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제6조(소심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요 지하시설물 -----

있다.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 회의는 매 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생략)

제8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

----- 분기 초-----.

----- 2월 중-----.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 주요 지하매설물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 주요 지하매설물 -----

-----.

<p>다.</p> <p>제9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된 결과를 <u>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u>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u>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u>각호의 사항</u>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 ----- <u>도</u> <u>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 지하</u> <u>매설물</u> ----- --.</p> <p>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u>도</u> <u>로굴착 관련기관</u>----- ----- -----.</p> <p>제11조(회의록) ----- ----- <u>각 호의 사항</u> 등을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4조(운영세칙) ----- ----- <u>운영에</u>----- ----- -----.</p>
---	--

관계법령 발취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입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② 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2012.11.27.> 4. 시도·군도·구도 :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③ 관리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7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 · 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7.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변경) 입안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6번지 일원
- 결정(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27	15	집산 도로	920	대2-59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광2-4	1998.11.19 (인고제118호)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313	대2-59	광2-4	일반 도로	광2-4		
변경	소로	1	나	10	국지 도로	551	광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광2-4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27	소로1-가 소로1-나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 - B= 15m → 10m - 중로2-227호선 → 소로1-가, 소로1-나	•주변 도로현황 및 도로 이용 교통량 분석을 통한 폭원 재검토에 따른 폭원 축소 및 노선 분리

-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검단1호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왕길동 (광로2-4,17호변 동측)	28,374	증)109.5	28,483.5	1998. 6.5 (인고제118호)	
변경	-	검단2호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왕길동 (광로2-4,17호변 서측)	26,616	증)126.5	26,742.5	1998. 6.5 (인고제118호)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검단1호녹지	•면적증가 - A=28,374㎡ → 28,483.5㎡ - 증) 109.5㎡	•노선 폭원 축소구간 완충녹지 결정
-	검단2호녹지	•면적증가 - A=26,616㎡ → 26,742.5㎡ - 증) 126.5㎡	•노선 폭원 축소구간 완충녹지 결정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7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7.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 입안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내
- 규 모 : 180,000m²
-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연구 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내	-	증) 180,000	180,000	금회 신설	자연녹지지역

- 연구시설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	비 고
20%이하	80%이하	4층이하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연구시설	신설 : 연구시설 면적 : 180,000m ²	· 환경산업에 대한 연구 및 실증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환경관련 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내 환경산업 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신설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2)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81호

서구 일부 도로명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2014. 07. 23. 개최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청라국제도시 일부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7.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기 간 : 2014. 07. 30. ~ 08. 18.(19일간)
2. 심의결과 : 청라국제도시 도로명 변경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심의결과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파이어로	청라사파이어로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도로명 변경신청	원안가결	서면동의 생략
한내로	청라한내로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도로명 변경신청	원안가결	서면동의 생략
비즈니스로	청라비즈니스로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도로명 변경신청	원안가결	주소사용자 과반수 동의서 제출 요함
솔빛로	청라솔빛로	인천광역시 내 같은 도로명 존재	도로명 변경신청	원안가결	주소사용자 과반수 동의서 제출 요함

3. 관계서류

- 관계서류 : 변경 조서 및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서구청 홈페이지 열람(<http://www.seo.incheon.kr/>)

4. 도로명 변경(확정) 절차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2014. 7. 23.)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도로 위계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m)			현도로명	부여사유	변경도로명	부여사유
1	로	청라2동	경서동 979-1	경서동 915-18	1.941	40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지구단위계획의 국제업무단지 지역	청라비즈니스로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2	로	청라2동	경서동 914-1	경서동 915-26	0.225	15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181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비즈니스로 181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3	로	청라2동	경서동 914-1	경서동 902-21	0.260	20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182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비즈니스로 182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4	로	청라2동	경서동 921-5	경서동 920-1	0.119	10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189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비즈니스로 189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5	로	청라2동	경서동 920-4	경서동 915-26	0.176	15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193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비즈니스로 193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6	로	청라2동	경서동 907-1	경서동 902-21	0.247	15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194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비즈니스로 194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7	로	청라2동	경서동 979-1	경서동 915-18	0.248	20	20	도로명 변경	비지니스로 28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비즈니스로 28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8	로	청라2동	원창동 459-1	경서동 834-126	3.080	30	20	도로명 변경	사파이어로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사파 이어 존에서 착안	청라사파이어로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9	로	청라2동	원창동 489-1	경서동 834-126	0.305	30	20	도로명 변경	사파이어로 140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사파이어로 140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도로 위계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m)			현도로명	부여사유	변경도로명	부여사유
10	로	청라2동	경서동 975-5	경서동 834-126	1.844	20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큰시내를 이르는 말	청라한내로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1	로	청라2동	경서동 943-1	경서동 941-8	0.386	20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100 번길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사파이어존의 청색에서 착안, 청색의 네번째 도로로 부여	청라한내로 100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2	로	청라2동	경서동 941-1	경서동 943-4	0.370	22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108 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청라한내로 108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3	로	청라2동	경서동 886-5	경서동 891-20	0.325	20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161 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청라한내로 161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4	로	청라2동	경서동 876-1	경서동 877-24	0.320	15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162 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한내로 162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5	로	청라2동	경서동 881-41	경서동 884-2	0.324	15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173 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청라한내로 173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6	로	청라2동	경서동 867-1	경서동 877-24	0.321	20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 174 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청라한내로 174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7	로	청라2동	경서동 975-5	경서동 834-126	0.379	20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64번길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청라한내로 64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18	로	청라2동	경서동 945-1	경서동 943-23	0.367	20	20	도로명 변경	한내로72번길	한내로 시작점부터 약72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청라한내로 72번길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도로 위계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m)			현도로명	부여사유	변경도로명	부여사유
19	로	청라2동	경서동 981-1	경서동 976-7	1.052	20	20	도로명 변경	솔빛로	청라경관구조계획의 사파이어존에 소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솔처럼 푸르고 빛처럼 밝게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부여	청라솔빛로	인천광역시 내 같은 도로명이 존재하여 변경신청
20	로	청라2동	경서동 981-3	경서동 981-7	0.140	10	20	도로명 변경	솔빛로18번길	솔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청라솔빛로 18번길	인천광역시 내 같은 도로명이 존재하여 변경신청
21	로	청라2동	경서동 981-8	경서동 981-12	0.133	10	20	도로명 변경	솔빛로28번길	솔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청라솔빛로 28번길	인천광역시 내 같은 도로명이 존재하여 변경신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83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4.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공시 개요

가. 결정·공시 대상

- 2014.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217필지

나. 필지별 처리결과 : **구 토지정보과 비치**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종전 구 조례에서 삭제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강화규정 삭제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삭제
- 광고물 실명제 규정 삭제
- 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용도 추가 지정(안 제6조)
- 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라. 주민협의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마.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사.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3조제8항)
- 아.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마련(안 제24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녹지경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401-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 032)560-4183,
FAX 032)560-278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의견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

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 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 게시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시 조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표시 허가 및 신고 중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이하	35만원
- 3.1m ² 이상 4.0m ² 이하	40만원
-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55만원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5만원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5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5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 10.1m ² 이상 12.0m ² 이하	110만원
-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0만원
-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0만원
-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0만원
-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 ² 이상 50m ² 미만	
- 20.0m ² 이상 25.0m ² 이하	210만원
- 21.1m ² 이상 30.0m ² 이하	230만원
- 30.1m ² 이상 35.0m ² 이하	245만원
- 35.1m ² 이상 40.0m ² 이하	260만원
- 40.1m ² 이상 45.0m ² 이하	280만원
- 45.1m ² 이상 50.0m ²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m ²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 ²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m ² 이상 20m ²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m ² 이상	70만원 + 연면적 2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2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4.0m ² 이하	35만원
-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m ² 이상	50만원+연면적 5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 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 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구지역	비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다)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 면 및 뒤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 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20㎡ 이하	40,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1개마다로 한다)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p>마. 옥상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p>40,000원</p> <p>5,000원</p>	
<p>바. 지주 이용 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p>20,000원</p> <p>2,000원</p>	
<p>사.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로 한다)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p>20,000원</p> <p>옥상간판에 준함</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p>3,000원</p> <p>1,000원</p>	
<p>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p>13,000원</p> <p>15,000원</p>	
<p>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선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p>400,000원</p> <p>10,000원</p> <p>2,000원</p>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마다로 한다)	5,000원	
거. 전단(1,000매마다로 한다)	5,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 6㎡ 이하	14,000원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 3.5㎡ 이하	14,000원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38,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14,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시·구지역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법 제20조제 1항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p>
<p>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p>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p> <p>80만원</p>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물 표시(변경)허가 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 서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차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제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